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500 발의연월일: 2022. 11. 28.

발 의 자:양정숙·강민정·김교흥

김남국 · 김민석 · 민형배

안호영 • 윤미향 • 윤준병

이상헌 · 장경태 의원

(119]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 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하고, 영상 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 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 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정 출석 및 증인신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자 하는 취지이나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에 위헌 결정을 하였음.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입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성폭력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의 증언이나 증인신문 등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커진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이에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등의 조사를 전담하고 신문을 중개하는 전문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피의자·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경우에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증인신문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성폭력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할 때에는 아동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면담기법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조사관이 전담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仲介)하도록함(안 제26조의2 신설).
- 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장소에서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하게 하는 등 특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 다. 전문조사관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등 19세 미만인 성 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절차를 보완함(안 제30조).

-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공판기일 등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곤란하고 부적당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등에는 피의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 사실과 해당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피의자 등의 반대신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 마.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의 특례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의4 신설).
- 바. 법원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려는 경우에는 사건을 반드시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디오 등 중계장 치에 의한 중계시설에서 전문조사관이 중개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 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

- 의 증인신문의사를 밝힌 경우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위한 증거보전 청구 절차를 신설함(안 제41조의2신설).
- 아.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한 조서나 영상녹화물녹 취서의 사본을 수사나 재판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1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28조의2 및 제2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전문조사관) ① 법원행정처장·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속 직원 중 아동·장애인의심리 및 조사면담기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훈련(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훈련"이라 한다)을받은 사람을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조사관(이하 "전문조사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에 따른 조사관
- 2.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
- 3. 사법경찰관리
- ② 법원 및 수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를 조사하거나 신 문할 때에는 전문조사관이 전담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仲介)하게 하여야 한다.
- 1. 19세 미만인 피해자
- 2.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 ③ 전문조사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문조사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한다.
- 제28조의2(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 절차 전담판사)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절차를 전담하는 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29조의2(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전문조사관이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와 증인신문의 중개를 담당하도록 할 것
 - 2.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 19세미만피해자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 4. 19세미만피해자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이 원하는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5. 해당 성폭력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성적(性的) 이력이나 사생활에 관한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6.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 7. 그 밖에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전문조사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 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

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1.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
-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 3.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 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이하 "영상녹화물녹취 서"라 한다)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 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

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의2(피의자 등의 반대신문의사 확인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 피해자와 영상 녹화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피 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영상녹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 1. 영상녹화물에 진술한 19세미만피해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 가. 16세 미만인 경우
 - 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 다. 그 밖에 19세미만피해자등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2.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 ②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함께 알려야 한다.
 - 1.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 2. 제5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를 원하지

-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3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사실
- 3.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세미 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을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영상녹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19세미만피해자등이 피의자,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 2.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3.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지하 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19세미만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으로 밝혀야한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는 20일이 지나도 할 수 있다.

- 제30조의3(영상녹화물의 청취·열람 등) ①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영상녹화물의 음향에 대한 청취를 신청하거나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또는 영상녹화물녹취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청취나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청취·열람·등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취·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1. 제3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청취·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0조의4(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 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해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 2. 19세미만피해자등이 사망・질병・트라우마・공포・기억소실(記憶 消失)・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준비 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

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 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 3.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30조의2제5항에 따라 19세미만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임의로 된 것으로 인 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19세미만피해자등의 나이, 심리 상태, 영상녹화물에 영상녹화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항"을 "같은 항 각 호"로 한다.

-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 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
 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 2. 19세미만피해자등

제2장에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및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

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 ①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려는 경우에는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 ② 법원은 증인신문을 위한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공판준비기일에 증인신문을 중개할 전문조사관 또는 진술조력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④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 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신문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법원은 증인인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신문할 사항과 신문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피고인, 변호인, 전문조사관,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은 신문할 사항과 신문 방법 등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40조의3(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방식에 대한 특례) ①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에도 불구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을 할 때에는 전문조사관으로 하여금 신문을 중개하도록 한다.
 - ②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항의 신문을 허용할지를 판단할 때에는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0조의4(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 ①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나이익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문을 할 때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는 중계시설의 영상과 음향을 법정으로 송신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중계시설은 피해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는 등의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로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신문을 할 때에 전문조사관이 중계시설에서 신문을 중개하게 하고, 전자장치 등을 활용하여 신문을 중개하는 전문조사관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⑤ 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신문을 할 때에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피고인의 퇴정 조치. 다만, 피고인이 참여한 상태에서는 19세미만 피해자등이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

- 2. 피고인 앞에 가림 시설 등의 설치
- ⑥ 재판장은 제5항제1호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증인신문을 종료한 때에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증인신문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 ①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신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동석하 거나 참석하는 경우에는 중계시설에서 피해자와 동석하거나 참여하 게 한다.
-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동석하는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
-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증인신문에 참여하는 진술조력인
- 제40조의5(19세미만피해자등 증인신문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할 때에는 영상녹화를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전문조사관을 통하여설명하여야 한다.
 - 1. 증인신문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신문과

정을 볼 수 있다는 사실

- ③ 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증거로 할 수 있다.
- 제41조의2(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 청구 절차 등에 대한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통지를 받은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을 위하여지체 없이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1. 제30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2. 제30조의2제5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세미만 피해자등의 증인신문을 위하여 지체 없이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통지를 받은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 이나 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로 한정한다.
- 1.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제3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제2호에 준하여 증거보전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판사는 제2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인용할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변호인의 선정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판사는 제2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인용하여 19세미만피해 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려는 경우에는 증거보전 준비절차(이하 이 조에서 "증거보전 준비절차"라 한다)에 부쳐야 한다.
- ⑦ 제2항의 청구에 따른 증인신문 장소, 증인신문 방식, 영상녹화 및 증거보전 준비절차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판준비절차"는 "증거보전 준비절차"로, "공판준비기일"은 "증거보전 준비기일"로, "피고인"은 "피고인, 피의

자"로 본다.

- 제41조의3(증거보전절차에서의 영상녹화물 열람 등) ① 피의자, 피고 인 또는 변호인은 제41조의2제2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판사에게 제출된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물, 조서 또는 영상녹화물녹취 서를 판사의 허가를 받아 청취·열람·등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취·열람·등사의 신청, 허용 및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3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판사"로 본다.
- 제41조의4(영상녹화물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30조의3 또는 제41조의3에 따라 열람·등사한 조서나 영상녹화물녹취서의 사본을 수사나 재판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제1항 중 "제30조제4항·제5항"을 "제3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검찰관"으로"를 ""군검사"로"로 한다.

제5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1조의4를 위반하여 제30조의3 또는 제41조의3에 따라 열람· 등사한 조서나 영상녹화물녹취서의 사본을 수사나 재판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부

터 적용하다.

제4조(피의자 등의 반대신문 의사 확인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기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종전의 제30조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영상녹화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0조의2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지를 지체없이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6조의2(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전문조사관) ① 법원행정
	<u> 처장·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u>
	다음 각 호의 소속 직원 중 아
	<u>동·장애인의 심리 및 조사면</u>
	담기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전문적
	인 교육・훈련(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전문조사관(이하 "전문조사
	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에
	따른 조사관
	2.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
	3. 사법경찰관리
	② 법원 및 수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19
	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를

조사하거나 신문할 때에는 전 문조사관이 전담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仲介) 하게 하여야 한다.

- 1. 19세 미만인 피해자
- 2.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 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 ③ 전문조사관은 19세미만피해 자등을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 개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인 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 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 ④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문조사관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 절 차 전담판사)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형사소송

<u><신 설></u>

- 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 거보전절차를 전담하는 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29조의2(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특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전문조사관이 19세미만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와 증인신문의 중개를 담당하도록 할 것
 - 2.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친화적 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 4. 19세미만피해자등이 피의자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 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 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 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 보존하여야 한다.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 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만, 19세미만피해자등이 원하 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5. 해당 성폭력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성 적(性的) 이력이나 사생활에 관한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6.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7. 그 밖에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할 것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 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 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 존하여야 한다.

- 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 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 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의 전 <u>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u>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 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 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 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 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 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 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 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 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 ② 전문조사관은 19세미만피해 자등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 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 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야 한다.
 -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 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미 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 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 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 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 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 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 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 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 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 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 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 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 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영상녹화 과 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 적으로 적어야 한다.
- 1.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
-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 3.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

 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 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 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 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 (이하 "영상녹화물녹취서"라 한 다)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 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

 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 제30조의2(피의자 등의 반대신문의사 확인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 피해자와 영상녹화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영상녹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영상녹화물에 진술한 19세미만피해자등이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것
 - 가. 16세 미만인 경우
 - 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

 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한 경우
 - 다. 그 밖에 19세미만피해자 등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

당하지 아니한 경우

- 2.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을 증 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실을 함께 알려야 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 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
- 2. 제5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 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30조의4제1 항제3호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사실

용될 수 있다는 사실

- 3.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을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증 거보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는 사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영상녹화 사실을 통

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19세미만피해자등이 피의자,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 2.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오
- 3.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19세미만피해자등, 그 법정대리 인 또는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 ⑤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다

만,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는 20일이 지나도 할 수 있다.

제30조의3(영상녹화물의 청취· 열람 등) ① 피의자, 피고인 또 는 변호인이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 지를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에게 영상녹화물의 음향에 대 한 청취를 신청하거나 영상녹 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또는 영상녹화물녹취서의 열람·등 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 호인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 인은 청취나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1항에 따른 청취·열람·등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허 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청취·열람·등사 신청 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 할 수 있다.

1. 제3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경우

-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 유로서 청취·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0조의4(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해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 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 2. 19세미만피해자등이 사망・질병・트라우마・공포・기억소실(記憶消失)・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

한정한다.

3.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이 제30조의2제5항에 따라 19 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임의로 된 것으로 인정할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19세미만피해자등의 나이, 심리 상태, 영상녹화물에 영상녹화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

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하게 하여야 한다. 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② ---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생략) <신 설>

-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 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 조의3, 제15조(제9조의 미수 범은 제외한다) 및 제15조의2 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 2. 19세미만피해자등
- 은 항 <u>각 호</u>-----

- ③ (현행과 같음)
- 제40조의2(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 비절차) ① 법원은 19세미만피 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려는 경우에는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하다.
 - ② 법원은 증인신문을 위한 심 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 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지정 한 공판준비기일에 증인신문을 중개할 전문조사관 또는 진술

조력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 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신문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증인인 19세미만피 해자등에게 신문할 사항과 신 문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피고인, 변호인, 전문조사관, 19세미만피해자등 의 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은 신 문할 사항과 신문 방법 등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0조의3(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방식에 대한 특례) ①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에도 불구하고 19세미만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을 할 때에 는 전문조사관으로 하여금 신 문을 중개하도록 한다.

②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항의 신문을 허용할지를 판단할 때에는 19세미만 피해자등의 변호사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제40조의4(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 ①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문을 할 때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는 중계시설의 영상과 음향을 법정으로 송신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계시설은 피해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로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신문

을 할 때에 전문조사관이 중계 시설에서 신문을 중개하게 하 고, 전자장치 등을 활용하여 신 문을 중개하는 전문조사관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신 문을 할 때에 필요한 경우 피 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피고인의 퇴정 조치. 다만, 피고인이 참여한 상태에서는 19세미만피해자등이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피고인 앞에 가림 시설 등의설치
- ⑥ 재판장은 제5항제1호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증인신문을 종료한 때에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증인신문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신문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동석하거나 참석하는 경우에는 중계시설에서 피해자와 동석하 거나 참여하게 한다.

-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동석하는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사람
-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증인신 문에 참여하는 진술조력인

제40조의5(19세미만피해자등 증 인신문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 등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할 때 에는 영상녹화를 하고 그 영상 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전문조사관을 통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1. 증인신문 과정이 영상녹화된

 다는 사실

-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증 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신문과정을 볼 수 있다는사실
- ③ 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 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 상녹화물은 증거로 할 수 있다. 제41조의2(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 청 구 절차 등에 대한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제30조의2제1항 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통지를 받은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 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세미 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을 위하 여 지체 없이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 의 청구를 검사에게 요청하여 야 한다.
 - 1. 제30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2. 제30조의2제5항에 따라 19세 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 문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 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 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을 위하여 지체 없이 「형사소송 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관 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 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통지를 받은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 각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요청이나 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해당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로 한정한다.

- 1.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요

 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인

 정되는 경우
- 2. 제3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있는 경우
- 3. 그 밖에 제2호에 준하여 증거보전을 청구하지 아니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소
- ④ 판사는 제2항에 따른 증거 보전의 청구를 인용할 때에 피 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 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 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변호인의 선정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⑥ 판사는 제2항에 따른 증거 보전의 청구를 인용하여 19세 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 하려는 경우에는 증거보전 준 비절차(이하 이 조에서 "증거

보전 준비절차"라 한다)에 부 쳐야 한다.

① 제2항의 청구에 따른 증인 신문 장소, 증인신문 방식, 영 상녹화 및 증거보전 준비절차 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부터 제 40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공판준비절차"는 "증거보전 준비절차"로, "공판 준비기일"은 "증거보전 준비기 일"로, "피고인"은 "피고인, 피 의자"로 본다.

제41조의3(증거보전절차에서의 영상녹화물 열람 등) ① 피의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41 조의2제2항의 청구가 있을 때 에는 판사에게 제출된 제30조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물, 조서 또는 영상녹화물녹취서를 판사 의 허가를 받아 청취・열람・ 등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취·열람· 등사의 신청, 허용 및 그 제한 에 관하여는 제30조의3을 준용 한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판사"로 본다.

제49조의2(간주규정) ①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이 조에서 "군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6항, 제29조, 제30조제4항·제5항, 제33조제1항부터제4항까지, 제34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2항·제4항의 있어 "법원"은 "군사법원(고등법원을 포함한다)"으로, "수사기관"은 "군수사기관"으로, "검사"는 "검찰

제	41조의4(영상녹화물 등의 목	적
	외 사용금지) 피의자, 피고	
	또는 변호인(피의자, 피고인	<u>또</u>
	는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포	함
	한다)은 제30조의3 또는 제	41
	조의3에 따라 열람·등사한	조
	서나 영상녹화물녹취서의 사	<u>본</u>
	을 수사나 재판의 목적이 아	<u>닌</u>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	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	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
	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u>같</u>
	.a/=1.1.11 .1.1 -a.a	
	<u>다)하여서는 아니 된다.</u>	
	<u>다)하여서는 아니 된다.</u> 49조의2(간주규정) ①	
	49조의2(간주규정) ①	 <u>-</u> _
	49조의2(간주규정) ① 	 <u>-</u> _
	49조의2(간주규정) ① 	 <u>-</u> _

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 법경찰관"으로, "국선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로 간주한다.

② • ③ (생 략)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u><신 설></u>

② ~ ⑤ (생 략)

		-
		-
	"군검사"로	_
		_
		_
		-
	②・③ (현행과 같음)	
제	50조(벌칙) ①	_
		_
		_
		_
	1.・2. (현행과 같음)	
	3. 제41조의4를 위반하여 제3()
	조의3 또는 제41조의3에 따리	ŀ

- 3. 제41조의4를 위반하여 제30 조의3 또는 제41조의3에 따라 열람·등사한 조서나 영상녹 화물녹취서의 사본을 수사나 재판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 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한 잔
- ② ~ ⑤ (현행과 같음)